

검사수수료(제22조 관련)

구 분	수수료	비고
관능검사	해당 물품가격의 10/1,000 이하	1. 제27조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 해당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수수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. 2. 농약잔류검사는 여러 가지 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분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성분으로 한다.
이화학검사	7,500원 이하/시료 1점	
미생물검사	10,000원 이하/시료 1점	
벤조피렌검사	66,000원 이하/시료 1점	
중금속검사	66,000원 이하/시료 1점	
농약잔류검사	66,000원 이하/시료 1점 1성분	
표백제검사	66,000원 이하/시료 1점	
조사포닌검사	66,000원 이하/시료 1점	
진세노사이드검사	66,000원 이하/시료 1점	